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34
----------	------

발의연월일 : 2024. 9. 4.

발 의 자 : 임미애 · 김용민 · 최기상
윤건영 · 오세희 · 박해철
정진욱 · 김문수 · 송재봉
박홍배 · 이용우 · 박희승
이재관 · 조인철 · 최민희
양부남 · 박지혜 · 백승아
이강일 의원(19인)

제안이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주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화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재화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설 규정에 따른 중복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0호,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제24조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0호 중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를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로 한다.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또는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5(재화등의 대금의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재화등의 대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⑩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7

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⑪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⑫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재화등의 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을 “통신판매업자

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를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등의 대금의 지급 및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을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생략)

③ ~ ⑤ (생략)

<신설>

판매업자-----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

<신 설>

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통신 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또는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5(재화등의 대금의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제3
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
입한 재화등의 대금을 직접 운
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
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
용하여야 한다.

④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
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
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
도관리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
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⑩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

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재화등의 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④ (생략)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벌칙) -----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